

# 2021년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

## I. 회의 개요

- 일 시 : 2021. 10. 8.(금요일)
- 방 법 : 온라인심의
- 참 석 자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
  - 심의위원 : 권현영(분과위원장), 김민아, 박정인, 임형주, 홍지만 위원
-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

- **의결사항** ※ 안건검토 :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
  -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
## II. 회의내용 및 결과

### 1. 의결안건

- 제호: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,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
  - 주요내용: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·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60건(안건번호 제2021-137090호~137149호).
  - 회의결과: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·전송자에 대하여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.

### Ⅲ. 주요내용

- A 위원: 순번 1번~60번 {■■■■■■■■} 사이트의 '[중점](영화)올드 (2021)'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 이에 모두 가결 의견임
- B 위원: 부결대상 안건 없습니다. 모두 가결처리함이 상당합니다.
- C 위원: 순번 1번~60번, 60건의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- D 위원: 순번 1~60번의 각 게시물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 133조의 3에 따른 시정권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단,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을 경우에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으로 족할 것임.
- E 위원: 순번 1번~60번 {■■■■■■■■} 사이트의 '[중점](영화)올드 (2021)' 등 60건의 게시물}은 불법 복제한 영상저작물(영화)을 웹하드 등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저작권법

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. 다만,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.

2021년 제26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 
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2021. 10. 8.

분과위원장 권현영

위원 김민아

위원 박정인

위원 임형주

위원 홍지만